

의안
번호

407

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1. 11. 24.
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나. 의안번호 : 제407호

다. 제출일자 : 2021. 11. 10.

라. 회부일자 : 2021. 11. 17.

2. 제안이유

- 국가를 위해 희생·공헌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관람료 면제를 기존 국가 유공자법에 따른 대상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7개의 법령에 의거한 대상자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구립미술관 관람료 면제 대상 추가 규정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

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

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, 제10조
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

「5.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
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
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

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」 제2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1. 9. 30. ~ 2021. 10. 20.

- 의 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의 “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계획”에 따라 현행 조례에 누락된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등 7개 보훈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유가족을 관람료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, 국가를 위해 희생·공헌한 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증진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사료됨.

〈각 법령에 따른 대상자 및 감면 정도〉

법령	대상자	대상 시설 및 감면 정도
국가유공자법	○ 유공자 본인 ○ 배우자 ○ 유족 중 선순위자* ○ 활동보조인(유공자가 상이등급 1~ 3급인 경우)	현행 조례 반영
독립유공자법	○ 유공자 본인 ○ 배우자 ○ 유족 중 선순위자 ○ 활동보조인(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)	○ 이용료 면제 - 고궁 및 능원 - 국공립 공원 - 독립기념관 - 전쟁기념관 -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- 국공립 수목원 - 국공립 자연휴양림 ○ 이용료 50% 감경 - 국공립공연장(대관공연 제외) - 국공립 공공체육시설
참전유공자법	○ 유공자 본인	
고엽제법	○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○ 등록된 후유의증환자	
5·18유공자법	○ 유공자 본인 ○ 배우자 ○ 유족 중 선순위자 ○ 활동보조인(유공자가 장해등급 1~ 3급인 경우)	
특수임무유공자법	○ 유공자 본인 ○ 배우자 ○ 유족 중 선순위자 ○ 활동보조인(유공자가상이등급 1 ~ 3급인 경우)	
의사상자법	○ 의상자 본인 ○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 ○ 배우자 및 자녀 ○ 활동보조인(의상자가부상등급 1·2급인 경우)	
국군포로송환법	○ 등록포로 ○ 억류지출신 포로가족	